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04.16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16조제4호 중 “시 단위” 를 “시·도 단위” 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 학생으로 한다.”로 함. (안 제16조제4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 학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특기장학생은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 · 고등학생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원안과 같음) 1. ~ 3. (원안과 같음) 4. 특기장학생은 시 · 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 · 고등학생으로 한다.</p>